

##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

### [ 영규정 제5조~제10조 ]

#### 제5조(입소자격)

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, 다만,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5-1조(입소정원/ 모집방법)

① 입소정원 : 당기관의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.

② 모집방법

1.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[www.longtermcare.or.kr]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) 를 통한 기관홍보
2. 상담 - 전화 및 방문 상담
3.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
4.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
5.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, 모임(지역 회의, 부녀회 회의 등)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이용자를 확보한다.
6.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한다.

#### 제6조(입소절차)

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·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질환,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.

#### 제6-1조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
①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: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기간 -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,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2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,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.
3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비율에 따른다.

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(고시)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개정(고시)에 따른다.

④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, 간식비,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,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<2022년도 기준>

| 구 분 / 기준수가(30일 기준) |           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    | 3등급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65,7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10원    | 56,24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,972,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1,830,300원 | 1,687,200원 |
| 본인부담               | 일반(20%)   | 394,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6,060원   | 337,440원   |
|                    | 기초수급자     |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| 0          |
| 비급여                | 식재료비      | 1식 3,000원 * 1일 3회 * 30일 = 270,000원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미용비      | 이, 미용사 내원 서비스시 = 실비청구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자원봉사자 내원 서비스시 = 커트(무료)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진료비 및 약제비 | 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청구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| 실비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
⑤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1. 권리

- (1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(2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(3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(4) 이용자에게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(5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2. 의무

- (1) 이용자에게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(2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(3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(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(5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- (6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

3.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(1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2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(3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(4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4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5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**제6-2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**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

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  
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  
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7조(입소자 처우)

- ①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, 성별, 신체,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, 신체·정신  
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,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.
- ②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입소  
자의 종교 활동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(입·퇴소심사위원회)

- ①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·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·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 
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요양보호사, 간호사(간호조무사), 사회복지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9조(퇴소 등)

- ① 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,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 
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. 다  
만,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,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  
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.
- ③ 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  
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·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10조(퇴소 후 관리)

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 
선정 여부, 연고자와의 연락여부,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  
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